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57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일자리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책자문 및 협의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함
- 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함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의 해촉 및 수당, 그 밖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 자진사퇴, 임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발생 시 해촉하도록 함
-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
-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결과

- 2010년 추경편성 및 2011년 예산반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개선요구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0. 9. 9 ~ 9. 29 (제출된 의견 없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위원회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금)

4. 제정근거

「지방자치법」(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16조의2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공공부문의 역량이 집결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0 금년도 서울시 경제성장률이 약 3.9%로 예상되는 등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공공일자리 대폭 축소 및 희망근로사업의 상반기 종료에 따른 계절적·정책적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됨.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양질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대로 일자리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안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입법체계상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마포구의회 의원 1명”은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의 제목 “운영”은 본문의 규정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은 입법체계상 삭제하며, 제1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조문 정리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삭제하여 이를 안 제3조에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는 안 제4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 각 호외의 본문에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

였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하였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1조의 수당지급과 관련, 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 중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u>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u></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되고, <u>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 1. <u>마포구의회 의원 1명</u> 2. <u>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u> 3. <u>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관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u> 4.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생략) ③ <u>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원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u>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4.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구청장</u> ----- -----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u> ----- ----- <u>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사람 -----</u> ----- <u>사람으로</u> -----.</p> <p><u>< 삭제 ></u> 1. ----- ----- 2. ----- ----- 3. ----- ----- <u>사람</u> -----</p> <p>② (원안과 같음) ③ ----- ----- ----- <u>단, 위촉직 위원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④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운영) 위원회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p> <p>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p> <p>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p> <p>4.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p> <p>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p> <p>③ -----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④ ----- ----- -----.</p> <p><삭제></p>
<p>제5조(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한다.</p> <p>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p> <p>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0조(위원의 해촉) ----- ----- ----- 중이라도 ----- -----.</p> <p>1. ~ 3. (원안과 같음)</p>
<p>제11조(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